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재 난 안 전 과-5443
등록일자	2016.3.19.
결 재 일 자	2016.3.2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재난관리팀장	재난안전과장	안전교통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태정	심덕보	장원석	박은섭	주윤중	03/21 신연희
협조 자	주택과장	정한호			

「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 만들기 」

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추진계획

- 1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
- 1 1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실시
- 1 2 아파트 화재안전 자체 안내방송 실시
- 1 3 2016년 동별 대표자 등 관리자 교육 실시 → 의견수렴
- 2 국가적 차원의 홍보강화 및 대책 마련 요청
- 2 1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교육·홍보 요청
- 2 2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요청
- 3 경제적인 피난시설 개발 및 보급
- 4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 및 스티커 제작 홍보강화

강 남 구 (재 난 안 전 과)

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추진계획

I 추진배경

- **구청장님 지시사항** (2015.03.02. 확대간부회의시)
 - 공동주택의 재난예방 안전대책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강 필요

<최근 지시사항>

- 국민안전처에 관련 문제 지속 제기할 것(2016.03.10.)
- 주민의견 수렴 후 국민안전처에 대책마련 요구할 것(2016.03.14.)
-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동 대표자 회의 개최 → 화재방지대책 안내 및 의견수렴

Ⅱ 아파트 현황

구분	단지수)	동수	세대수	비율(%)	비고
전체	260	1,550	118,470	100	20세대 이상 아파트
피난시설 미 설치	83	850	68,458	57.8	'92.10.월 이전 허가된 아파트

Ⅲ 문 제 점

- 1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및 법제화 곤란
- 92년 이전 준공 아파트, 현행 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 설치 불가
 - 발코니 경계벽 내력벽으로 시공되어 있어 철거 불가 → 경량칸막이 X
 - 바닥슬라브 철거 불가 → 하향식 피난구 X
 - 별도 공간마련 불가 → 대피공간 X
-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및 소급 적용 곤란 의견 : 관련기관
 - 국민의 비용 부담 커 개정 곤란(반대의견 많음)
- O 실효성 부족 : 설치비용 과다로 실제 설치 곤란 및 행정조치 시 주민반발 등

기관명	일시	법제화 및 소급적용 관련 의견	비고
국민안전처	2015.03.03. (안전처 방문)	 국민의 비용부담이 커 개정 곤란 ※ 국민안전처 소관사항 · 개정에 따른 실효성 부족 · 법령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커 실제설치 가능성 매우 낮음 · 또한 다수의 개별 거주지에 대한 피난시설 설치여부확인의 어려움 · 미 설치에 따른 행정조치 등에 대한 주민 반발등도 예상됨 	소방제도과
	2015.09.15. (국정감사)	- 피난시설 설치 의무 소급적용 법제화 질문안함 - 현재 상태에서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필요	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
	2015.09.16. (공청회)	 현재 이용되는 피난시설 자체도 보완이 필요 모든 아파트에 설치토록 강제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커 반대의견 많음 최고의 대책은 국민의 관심이며, 대피보다는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가 더욱 중요 	이상규 소방제도과장
국토교통부	2015.10.22. (YTN 방송)	- 피난시설 설치 의무 소급적용 법제화 질문안함 - 안전교육 및 홍보가 중요	김경환 1차관
국회 (황인자 국회의원)	2015.08.24. (국회 방문)	- 법령 개정은 국민의 비용부담이 커 다른 방안 모색이 필요	선주천 보좌관
서울중앙지검 (형사 제8부)	2015.06.03. (지검 방문)	-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곤란 - 법률 개정보다 국민스스로 필요성 인석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- 소화기 비치 등이 더욱 중요	이완식 부장검사

2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홍보강화 미흡

-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에는 피난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,
- 현재까지도 소방관서의 교육 및 홍보는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 관리에 중점을 둠
- 언론기관에서도 여전히 피난시설이 있는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중점 보도

3 피난시설 설치비용 과다

○ 작은 방 등 대피공간 활용(방화문 설치): 100만원 이상

○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: 150만원 이상

○ 화재대피함 : 300만원 이상

Ⅳ 개선대책 및 추진계획

1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

|1 - 1|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실시(4<mark>월</mark>)

O 대 상: 강남구 고문변호사

○ 내 용 :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피난시설을 모든 아파트(기존 아파트

포함)에 설치토록 법령 소급적용 가능여부

○ 활 용: 자문결과와 주민의견 수렴 결과 법령개정이 가능(필요)하다고 판단될 경우

→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법령개정 협조 요청(5월)

1 - 2 아파트 화재안전 자체 안내방송 실시(4월)

O 방 법: 아파트 방송시설 이용 주민대상 안내방송

○ 횟 수 : 총 9회 (4월 매주 토요일·일요일 각 1회)

O 내 용: 피난시설 설치 필요성 및 종류, 설치비용, 관리방법 등 안내

- 안내방송(안) 붙임 참조

│1 - 3│ 2016년 동별 대표자 등 관리자 교육 실시 → 의견수렴<mark>(5월)</mark>

○ 대 상 : 아파트단지 동 대표, 관리소장(270단지/ 1,744명)

※ 상반기 교육 시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 관리자 적극 참석 유도

○ 일 정: 상반기 (5월), 하반기(10~11월)

○ 내 용: 아파트 화재안전 문제점 및 대피사례 교육, 피난시설 설치 필요성 안내

피난시설 설치의무 법제화 찬성여부 의견수렴 등

2 국가적 차원의 홍보강화 및 대책 마련 요청

2 - 1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교육·홍보 요청(3월)

- 국민안전처, 국토교통부, 서울소방재난본부, 강남소방서, YTN 등
 - 최근 피난시설 이용 피난사례
 -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위험성과 피난시설 설치 필요성 안내
 - 피난시설 설치권장 및 설치방법 안내에 중점

<최근 추진사항>

- 아파트 화재안전 사업관련 후속보도 등 검토 요청 →YTN(2016.03.02.)
 - 「안전한 사회 만들기」를 위한 업무협약 시 우리 구 추진계획 제공 및 후속보도 검토 요청
- 추가 대책마련 및 지속 추진 요청 →국민안전처, 국토교통부(2016.03.07.)
 - 기존 아파트에 적용 가능한 피난시설 개발 및 국가적 차원의 홍보 등 대책 마련 및 지속 추진

2 - 2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요청(5월)

○ 개정검토 법령 : 건축법 시행령 46조(방화구획 등의 설치)

O 법제화 요청 관련기관: 국토교통부, 국민안전처

3 경제적인 피난시설 개발 및 보급

■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 실증연구 추진 → 국토교통부 대책건의(7월)

O 내 용 :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 아파트 현장 적용

○ 목 적 : 기존 아파트에 설치 가능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피난시설 개발

○ 활 용 : 기존 아파트에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 적용 중앙부처 건의

4 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 및 스티커 제작 홍보강화

■ 국민안전처 제작 「아파트(공동주택) 화재안전 매뉴얼」제작(4월)

O 부 수: 13만부

○ 활 용 : 아파트 전 세대에 배부/ 각종 교육 및 유형별 재난안전 훈련시 활용

※〈화재시 안전한 대피요령 및 대비방법〉스티커 2만매 추가 제작 활용

Ⅴ 행정사항

■ 부서별 단위과제 세부 업무추진(재난안전과, 주택과)

구분	단위과제	추진시기	주관부서 (담당자)	
1-1	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실시	4월	재난안전과	
2-2	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피난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 요청	5월	(김승훈)	
1-2	아파트 화재안전 자체 안내방송 실시 및 의견수렴	5월	ᄌ태ᅴ	
1-3	2016년 동별 대표자 등 관리자 교육 실시 및 의견수렴	5월	주택과	
2-1	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교육·홍보 요청	3월	재난안전과 (강신욱, 박원천)	
3	경제적인 피난시설 개발·보급 및 국토교통부 건의	1~7월	재난안전과 (김태정)	
4	아파트 화재안전 매뉴얼 및 스티커 인쇄 및 배부	4월	재난안전과 (김은정)	

붙임: 아파트 자체 안내방송(안) 1부. 끝.